

2024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공고

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하여
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2024년 4월 ~ 12월
-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 56시간)
- 보 수: 월 552,16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- *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- 모집인원: **3명**
- 접수기간: **2024. 4. 15. (월) ~ 4. 19.(금) 18:00**
- 근무장소: 화도장난감병원, 화도찾아가는장난감도서관, 팜아트홀릭
- 모집분야

구분	배치직무	근무처 소재지
복지일자리	장난감 분해·수리 1명 / 장난감 세척 1명 (장난감도서관 개관 전까지 환경정리)	화도읍 (금곡동)
	스마트농업 1명	진건읍

***화도장난감도서관 개관(5월 예정)전까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환경정리 직무로 근무**

- 접수방법: 본인 방문신청
- 접수처: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(경기도 남양주시 홍유통로 273-1(금곡동))
- 참고사항

-1차 서류합격자 발표: 2024. 4. 22.(월) 예정

-2차 면접일: 2024. 4. 23.(화) 예정

***참여자 모집 상황에 따라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**

- 문의: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☎070-4880-3435, 070-5001-3361
-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과 최종 선발자는 개별통보 및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고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
 -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장애인 중
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-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 - 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 '23년 신청자의 경우, '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-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- 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- 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-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-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4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- ① **참여신청서**[서식7]: 희망직무 기재 필수
- ② **참여자 정보 확인서**[서식8]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- ③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**(장애인일자리사업)(필수)[서식9]
 - 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(ex. 도장 등)
- ④ **장애인증명서**
- ⑤ *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**
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구분	증빙서류	
① 여성가장	구분	첨 부 서 류
	공통사항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	선택사항	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

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 확정판결문
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

(참고) 여성가장이란?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- ① 미혼여성이거나,
 -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
 - 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-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- ※ **관련근거:**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②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	-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
③ 취업지원대상자	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5. 기타 참고사항

○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
-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
- ② 직업재활서비스(직업훈련)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
※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, 취업알선, 직업 훈련 내역
- ③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
- ④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

○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-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- 24세 이하(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 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 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○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치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**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**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 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“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 명령”이라 한다)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**
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장애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**
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*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 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-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.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- *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접수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* 참여자 모집에 응시한 접수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접수자는 최종 선발여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* 최종 선발자를 제외한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방문 및 팩스(031-592-7150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*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,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.
-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>공지사항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남양주소식>모집공고/일자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
(☎ 070-5159-5354, 070-5001-336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5일

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